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185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준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은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990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3,9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1. 11. 30.자 청구취지 변경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2,111,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20줄부터 2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에 관하여 2020. 5. 13.경 인지대 중 744,750원을, 2020. 5. 26. 송달료 중 123,059원을 환급받았다.

사.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착수금 5,500,000원, 성공보수금 7,7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변호사의 보수, 송달료, 인지대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청구하였던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는 피고가 패소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할 것이지 원고들이 부담할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 12,400,000원, 송달료 및 인지대 1,650,000원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합계 14,050,000원(= 12,400,000원 + 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4,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가 종결된 이후 송달료 123,059원, 인지대 744,750원을 환급받았고, 원고들의 임의변제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7,700,000원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합계 7,767,809원[= 송달료 123,059원 + 인지대 744,750원 + 변호사의 보수 중 착수금을 제외한 6,900,000원(= 원고들이 지급한 변호사의 보수 상당 소송비용 12,400,000원 - 착수금 5,5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7,767,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2014. 9. 25.자 차용금에 관한 주장

원고 B는 2014. 9. 25. 피고에게 180,000,000원의 차용금(이하 '2014. 9. 25.자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9. 9. 24.까지 상환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은 17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4. 9. 25.자 차용금이 180,000,000원이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말을 듣고 2014. 9. 25.자 차용금의 임의변제로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170,00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변호사의 보수, 송달료, 인지대에 관하여

1)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

2)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는 원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2014. 9. 25.자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것이고, 원고 A도 2014. 11. 18.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014. 9. 25.자 차용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그 변제일인 2019. 11. 18.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2. 23.에야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임의변제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가 소취하로 종결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소송비용은 승소한 당사자인 원고들이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한 원고들의 은행대출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라지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더라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임의변제받아 그 소송의 목적을 모두 이루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4)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가 소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송달료 및 인지대 합계 867,809원(= 송달료 123,059원 + 인지대 744,750원)을 환급받았는데, 이는 송달료 및 인지대 환급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지 못한 착오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잘못 알린 결과, 원고들이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들은 각 433,904원(= 867,809원 / 2,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867,80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반환의 소의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은 변호사의 보수 12,400,000원, 송달료 및 인지대 중 792,191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송달료 및 인지대 상당 합계 1,650,000원 - 피고가 환급받은 송달료 및 인지대 합계 857,80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급받은 송달료 및 인지대 상당 부당이득금 각 433,9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2021. 11. 30.자 준비서면(원고들은 이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송달료 및 인지대 환급액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송달일인 2021.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2014. 9. 25.자 차용금 중 10,000,000원에 관하여

-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 2)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014. 9. 25.자 차용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4. 9. 25. 원고 B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170,000,000원뿐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그 배우자인 원고 B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180,000,000원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던 당시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받아야 할 3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2014. 9. 25.자 차용금이 17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014. 9. 25.자 차용금은 18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B이 이 사건 2014. 9. 25.자 차용금을 임의변제하기 전에, 원고 A이 앞서 본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